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3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정혜경·전종덕·박수현

이수진 • 허성무 • 김 윤

윤종오 • 한창민 • 이용우

이재강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,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 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, 도급인, 노무 제공자, 계약관계(예술인)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,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,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 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

하고(안 제76조의2, 제76조의3),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109조, 제110조, 제116조).

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(안 제76조의4).

법률 제 호

##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2의 제목 중 "괴롭힘의"를 "괴롭힘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,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"제3자에 의한 괴롭힘"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6조의3제1항 중 "발생"을 "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발생"을 "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괴롭힘과"를 "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발생"을 "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발생"을 "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"발생"을 "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"발생"을 "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직장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

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·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서 신고 또는 피해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안된다.

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4(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에 대한 특례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3장의4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또는 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경우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.

제109조제1항 중 "제76조의3제6항을"을 "제76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"로 한다.

제110조제1호 중 "제78조부터"를 "제76조의2제1항·제2항, 제78조부터"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91조"를 "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1조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76조의2(직장 내 <u>괴롭힘의</u> 금	제76조의2(직장 내 <u>괴롭힘 등의</u>	
지) (생 략)	금지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	
	과 같음)	
<u>&lt;신 설&gt;</u>	②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	
	급인,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	
	촌 이내의 친족은 법률상 또는	
	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	
	로자에게 신체적・정신적 고통	
	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	
	키는 행위(이하 "제3자에 의한	
	괴롭힘"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	
	아니 된다.	
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	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	
시 조치) ① 누구든지 직장 내	장 내 시 조치) ①	
괴롭힘 <u>발생</u> 사실을 알게 된또는 제3자에 의힌		
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	롭힘 발생	
고할 수 있다.		
	<u>.</u>	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	②	
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		
힘 <u>발생</u>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	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	
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	<u>발생</u>	
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		

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 사 기간 동안 직장 내 <u>괴롭힘</u> 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 등"이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 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 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<u>발생</u>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(생략)
-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

③		
괴롭힘		
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과		
<b>4</b>		
<u>또는</u>		
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		
⑤ (현행과 같음)		
<u>(6)</u>		

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①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<신 설>

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
<u>생</u>
⑦
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
<u>발생</u>
⑧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직장
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
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
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
도급・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
서 신고 또는 피해 사실을 이
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
<u>다.</u>

<신 설>

제109조(벌칙) ①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 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 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<u>제76 조의3제6항을</u>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② (생략)

- 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제10조, 제22조제1항, 제26
    조, 제50조, 제51조의2제2항, 제52조제2항제1호, 제53조제1항·제2항, 같은 조 제4항 본

제76조의4(노무제공자 및 예술인
에 대한 특례) 「산업재해보상
보험법」제3장의4에 해당하는
노무제공자 또는 「예술인 복
지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예술
인의 경우는 제2조제1항제1호
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 및
제76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근
로자로 본다.
제109조(벌칙) ①
제76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
지를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10조(벌칙)
<u>,</u>

문・제7항, 제54조, 제55조, 제59조제2항, 제60조제1항・제2항・제4항 및 제5항, 제64조제1항, 제69조, 제70조제1항・제2항, 제71조,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5조,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2조,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

2. (생 략)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 2조, 제48조, 제66조, 제74조 제7항·제9항, 제76조의3제2 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, <u>제</u> 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

3. · 4. (생략)

③ (생략)

<u>제76</u> 조의2제1항·	제2항, 제
78조부터	
2. (현행과 같음)	크 게 리 - a)
제116조(과태료) ① (	연행과 같
음)	
2	
1. (현행과 같음)	
2	
<i>Δ</i> .	
	<u>제7</u>
6조의3제2항부터	제5항까지,
제91조	
3.·4. (현행과 같음)	
, _ , .	
③ (현행과 같음)	